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659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 김석기・김기현・金炳旭

김태호 • 박 진 • 정진석

조명희 · 조태용 · 지성호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 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 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5조).
- 사. 국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

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재외동포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 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책지원에 관한 정책
 -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 라.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 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정책 바. 모국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 사. 재외동포의 거주국의 재외동포단체 및 모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 아.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 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 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 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의 장(이하 "재외동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재외동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 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차별금지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는 재외동포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외동포의 국내정착지원)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6조(참정권의 보장 등) 국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 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 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한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